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결과 (2014.10.27)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의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제4조(월정수당지급)제1항의 매월 월정수당 161만 2,000원을 166만 8,000원으로 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2016년 당초 예산반영
 다. 기 타
 1) 2015년~2018년도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1(2014.10.27)]

 2) 조례안예고 : 의견 없음〔2016. 11. 14~ 11. 18(5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4년 10월 27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을 반영하여 현재 161만 2,000원에서 2017년도에는 166만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